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일괄 정비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67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	2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6
3. 조문별 검토	7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조)	7
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2조)	13
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3조)	16
라. 「자격기본법」 개정(안 제4조)	19
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조)	24
4.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	27
【참고자료】 민간자격 현황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법률 제7428호, 2005. 3. 31]이 제정된 바 있음¹⁾.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²⁾에 의하면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제정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의 법률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지의 제정안과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74조(당연복권)³⁾ 및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될 수 있는 점,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16조⁵⁾에 따라 ①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성이 분명하여야 하고,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야 하며, ③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총 17개)이 함께 발의되었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2203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2024-08-28
220336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2024-08-29
220346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2024-08-30
220346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3인)	2024-08-30
220350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5인)	2024-09-02

5)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22035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2024-09-02
220354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9-02
220354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2024-09-02
22035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2024-09-02
220355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2024-09-03
220363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4-09-04
220375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2024-09-06
220375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2024-09-06
22037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2024-09-06
22039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2024-09-12
220395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2024-09-12
22041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용만의의원 등 12인)	2024-09-23

자료: 의안정보시스템(기준일: 2024.11.04.)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의 제명(題名)은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며,

결격사유 등에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5개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5개 조항의 본문과 부칙⁶⁾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조문	개정 법률명	개정 조문
제1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제17조(교원의 자격)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제3조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제4조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조문별 검토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조)

제정안 제1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및 제17조(교원의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및 교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제6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7.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7. (현행과 같음)

대안교육기관⁷⁾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이에 대안교육기관은 미등록 대안교육시설과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⁸⁾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⁹⁾는 대안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의 등록기준을 두어 경비와 유지 방법,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¹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9. (생략)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教授)·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결격사유와 마찬가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일부 상응하는 수준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교원의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외에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두어 교원의 자격요건으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¹¹⁾

10)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정안 제1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당사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일정한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교육기관인 만큼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및 교원의 역할이나 책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및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정적 운영¹²⁾과 회계운용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자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¹³⁾는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¹⁴⁾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¹⁵⁾ 부분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관련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교원에게 공교육의 임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13) 헌재 2008.11.27. 2005헌가21

한편, 교원은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교원이 수행하는 교직 자체가 공교육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교원에게 고전적인 의미의 사표(師表)로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엄결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뢰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수준은 여전히 여러 직역 가운데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교원이 공평무사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공교육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바,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한 교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미의 공교육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피교육자나 그 학부모 등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해 교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임계약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위임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민법 제690조)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교원에 대하여 위임자가 그 신뢰를 거두어 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교원에게 공교육의 임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14)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만,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자격, 복무, 채용, 신분보장 등에 있어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¹⁶⁾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참고로, 제정안과 동일취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69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¹⁷⁾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임.

따라서,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제정안 제1조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교원의 책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16)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547호)

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2조)

제정안 제2조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¹⁸⁾는 전부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으

18)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로 동 법이 마련될 때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업무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
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관
해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
요성이 있으나,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고려 없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영업활동
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이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하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사회복지시설¹⁹⁾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공공성을 가지고, 사
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해당 임원 등이 기관·법인의 재정 상
황에 대한 감시 및 중요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는바, 이는 공공성, 신
뢰성이 높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1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
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영유아보육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재산요건으로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또한, 어린이집 설립·운영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 비용²¹⁾을 보조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20)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27.>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한다.

21)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② (생략)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3조)

제정안 제3조는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제8조의2(결격사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8조의2²²⁾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22)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임.

「유아교육법」 제2조²³⁾에 따른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²⁴⁾은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소유 의무²⁵⁾ 및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

23)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2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건축물
 -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 나.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²⁶⁾ 등을 규정하여 유치원 운영을 위한 일정 수준의 재산을 소유 및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유치원 설립·운영자에게 경제적 활동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정안 제3조는 당사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유아교육법」 제3조²⁷⁾에서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교사·교지 소유 의무 및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2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7)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라. 「자격기본법」 개정(안 제4조)

제정안 제4조는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규정하고(「자격기본법」 제18조제2호),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자격과 관련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호를 함께 삭제하려는 것임(「자격기본법」 제1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18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2. (생략)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 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제18조제1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민간자격제도는 개인, 단체, 법인이 자유롭게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게 하되 민간자격 중에서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인자격제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후 등록제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개정되어 왔음[무등록제 및 공인자격제(1997. 3. 27. 제정) → 사후등록제(2007. 4. 27. 개정) → 사전등록제(2013. 4. 5. 개정)].²⁸⁾²⁹⁾

28)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을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 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관련 개정 이력 >

자격기본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314호, 1997. 3. 27., 제정]	자격기본법 [법률 제8390호, 2007. 4. 27, 전부개정]	자격기본법 [법률 제11722호, 2013. 4. 5, 일부개정]
제15조 (민간자격관리자)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자격의 공인) ①민간자격 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 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민간자격을의 신설 및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 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 다.	제17조(민간자격을의 신설 및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 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u>주무부장관에게 등록</u> 하 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³⁰⁾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³¹⁾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도 말 기준 민간자격 등록 현황(폐지·취소 종목 제외)은 총 51,614개(14,363개 기관³²⁾)인데, 최근 4년(2020~2023년도) 평균 5,970개 종목이 새로 등록되고, 2,223개 종목이 등록 폐지되는 등 민간자격의 등록 및 폐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민간자격 현황>

30)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 4. (생략)

31) 민간자격 등록절차참고로, 2024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 매뉴얼(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_1-1호)에 따르면,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검정시설 ·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기타 무상사용 등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32) 기관유형으로는 법인(5418개, 38%), 개인·단체(8945개, 62%) 수준임.

【민간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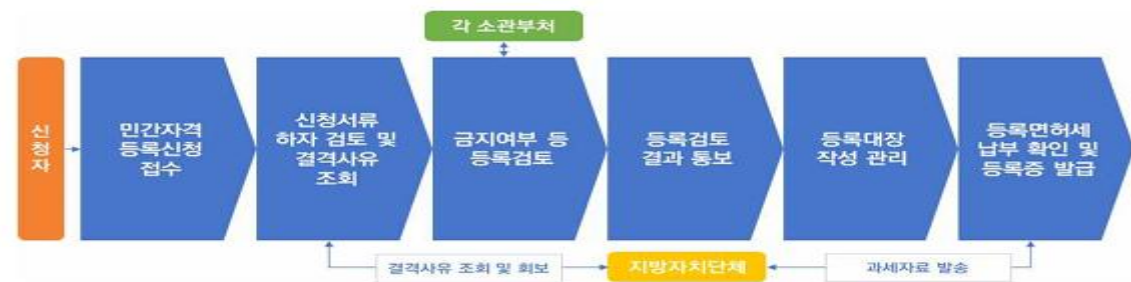
□ 신청 주체 및 대상

- 신청 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로 규정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
- 신청 대상: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 민간자격 등록기준

구분	신청자격의 금지대상 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록기준	· '자격명칭'이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기타 관계 법령상 명칭사용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자격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가 「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토 방법	· 소관 주무부장관*이 상기 기준에 따라 금지 여부 검토 ·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	· 민간자격관리자의 등록기준지(구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 · 주무부장관은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
관련 법령	·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제17조 · 「국가기술자격법」 및 국가자격 관련 개별 법령 등	· 「자격기본법」 제18조 · 「자격기본법」 제18조제5호에 따른 법인 임원은 제출서류 '결격사유확인서'로 같음

□ 민간자격 등록절차



자료: 2024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 매뉴얼 pp. 6-7 편집 재구성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³³⁾에 따르면, 민간자격제도는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자격증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①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을

33)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35호(2021.12.30.) 참고

받고 자격증을 수여함에 따라 자격증이 남발되거나, ②일부 등록민간 자격이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민간자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등록민간자격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 분야에서 유사·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민간자격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며, 주무부처의 민간자격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경제적 활동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정안 제4조는 당사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의 취지가 인정됨.

다만, 민간자격제도가 무등록제에서 사전등록제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완화는 민간자격과 교육과정이 무분별하게 등록되어 수준이 저하되거나,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조)

제정안 제5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9조(결격사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7. (생략) ② (생략)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학원법 제2조³⁴⁾에 따른 “학원”은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법 제4조³⁵⁾에 따라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 사. (생략)

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아울러, 학원법 제8조36)에 근거하여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는 등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이러한 학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학원 설립·운영자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여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경제적 활동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정안 제5조의 입법취지에는 공감되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측면이 있음.

다만, 학원법 제2조의²³⁷⁾에 따라 유아 및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교육의 책임도 중요하므로 양질의 학원교육을 위한 학원의 안정적 운영, 교육소비자 보호 및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 제4조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조문	개정 법률명 및 조문	의견
제1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제17조(교원의 자격)	○ 교육부: 일부 수용(설립·운영자: 신중검토, 교원: 수용) - 대안교육기관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령기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필수적임 ※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약 94%가 전일제로 운영됨 ('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파산선고자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기관 운영 및 재정적 안정성,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자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함 ※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는 등록 시 △경비와 유지 방법,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교육청에 제출해야함 - 다만,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의 경우는 설립·운영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재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대안교육기관 교원 임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 교육부: 신중 검토 -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재산 요건)에 따라,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근저당설정, 담보대출 등을 제한하는 어린이집 재산 요건 규정 유지하고 있음 - 파산상태인 개인은 개인 신용별로 복권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있고, 법원심사·복권결정까지 어린이집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

조문	개정 법률명 및 조문	의견
제3조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 교육부: 신중 검토 -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행 유치원 설립 기준은 대출 없이 자기자본 비율이 100%가 되어야 함 - 파산상태인 개인은 개인 신용별로 복권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있고, 법원심사·복권결정까지 어린이집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
제4조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 교육부: 신중 검토 -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등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자격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는 민간자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된 최소한의 규제임 -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부실운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하는 것은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민간자격 등록 현황 : ('21)44,257개 → ('22)47,559개 → ('23) 51,614개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 교육부: 신중 검토 - 학원의 경우 유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어 학원의 안정적 운영 및 교육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학원의 책무성 담보가 필요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민간자격 현황(자료: 교육부)

1.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구분	접수		등록		등록폐지	등록취소
2008	829 개 종목	304 개 기관	655 개 종목	259 개 기관	-	-
2009	561 개 종목	189 개 기관	380 개 종목	141 개 기관	-	-
2010	736 개 종목	249 개 기관	539 개 종목	227 개 기관	10 개 종목	-
2011	1,141 개 종목	484 개 기관	1,053 개 종목	398 개 기관	2 개 종목	-
2012	1,909 개 종목	680 개 기관	1,453 개 종목	494 개 기관	7 개 종목	-
2013	3,590 개 종목	1,015 개 기관	2,748 개 종목	754 개 기관	36 개 종목	-
2014	9,506 개 종목	2,104 개 기관	6,253 개 종목	1,632 개 기관	223 개 종목	-
2015	8,323 개 종목	2,191 개 기관	6,521 개 종목	1,971 개 기관	1,400 개 종목	11 개 종목
2016	7,647 개 종목	2,220 개 기관	6,153 개 종목	2,041 개 기관	932 개 종목	1 개 종목
2017	8,546 개 종목	2,393 개 기관	6,302 개 종목	2,139 개 기관	1,357 개 종목	1 개 종목
2018	8,077 개 종목	2,517 개 기관	5,849 개 종목	2,238 개 기관	2,315 개 종목	- 개 종목
2019	8,457 개 종목	2,878 개 기관	6,869 개 종목	2,655 개 기관	1,856 개 종목	- 개 종목
2020	8,300 개 종목	2,842 개 기관	6,079 개 종목	2,595 개 기관	2,515 개 종목	- 개 종목
2021	8,196 개 종목	2,772 개 기관	6,056 개 종목	2,496 개 기관	1,987 개 종목	- 개 종목
2022	7,534 개 종목	2,879 개 기관	5,572 개 종목	2,426 개 기관	2,270 개 종목	- 개 종목
2023	7,993 개 종목	3,109 개 기관	6,176 개 종목	2,908 개 기관	2,121 개 종목	- 개 종목
총계	91,345개 종목		68,658개 종목		17,031 개 종목	13 개 종목
현 기준 등록 현황(폐지·취소 종목 제외)			51,614개 종목(14,363개 기관*)			

* 중복(2개 이상 자격이 등록된 경우) 기관을 제외한 총계

* 기관유형 : 법인(5,418개 기관, 38%), 개인·단체(8,945개 기관, 62%)

2. 연도별 민간자격 공인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공인 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65	62	61	68	51	34	42	33	41	28	-	29	30	1,584
공인	28	7	5	6	6	12	6	3	7	11	10	4	6	5	3	5	4	2	1	2	2	-	0	1	136
취소 및 기간 종료	-	-	-	1	-	1	-	1	-	-	1	13	2	1	3	1	2	4	2	5	1	1	1	1	41
공인 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97	88	92	96	96	100	102	100	99	96	97	96	95	95	95

자료: 교육부